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무로 사망·전사해 특별승진 시 승진계급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도록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법률 제20658호, 2025.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신설하는 한편, 합산 반납금의 가산이자를 급여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장애인 수급자의 전화 청구를 허용하며, 다자녀 대여학자금 상환 특례의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추서승진 시 기준소득월액 산정방식 신설(안 제5조제4항, 제9조제1항제4호)

공무로 사망·전사해 특별승진된 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승진계급으로 산정하도록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본적으로는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추서승진에 따른 소득 증가를 가정하여 산정하되, 추서승진으로 보수체계가 유지되는 경우와 바뀌는 경우로 구분하여 산정하도록 함.

나. 합산 반납금의 가산이자 부담 경감(안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재직기간 합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급여 유형에 따라

합산반납금의 가산이자를 달리 적용하여 퇴직일시금에 대해서는 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퇴직연금일시금에 대해서는 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합산반납금을 산정하도록 함.

다. 수급자 편의 제고 및 다자녀 공무원 우대(안 제41조제2항, 제57조제2항, 제72조제6항제4호)

-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가입자도 전화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자의 편의를 증진함.
- 2) 다자녀의 기준을 종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현행 3자녀 이상부터 적용되는 대여학자금 상환 특례를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적용 기준을 변경함.

라. 수급자 등의 신상 조사 및 변동 확인 방법 확대(안 제33조제3항 및 제4항, 제52조, 제96조, 별표3, 별표4, 별표6, 별표7)

- 1) 수급자의 신상 조사 및 변동 파악을 위한 방법을 체계화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기관 등을 확대
- 2) 장애 해소 관련 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신청 증빙서류 변경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04. 09. ~ 05. 19.)

3) 행정규제 : 생략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급여(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퇴직유족연금은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급여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다만, 연봉제의 적용대상(새로이 연봉제의 적용대상으로 특별승진된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1.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2. 「공무원보수규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특별승진으로 인한 봉급월액 증가분(새로이 연봉제의 적용대상으로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호봉제적용대상 공무원에 준하여 종전의 직급·호봉체계에 따라 승진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봉급월액 증가분을 말한다)

3. 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제2항 각 호의 금액(직무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대상으로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68조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나등급에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받는 직무급 금액을 말한다)에 대통령령 제20537호 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연봉월액 중 봉급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

제9조의 제목 중 “소득자료”를 “소득자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조제4항에 따른 봉급월액 증가분의 산정 및 급여 지급에 필요하다고 공단이 정한 자료: 법 제30조제1항 단서의 급여 사유가 발생한 즉시

제22조제2항 중 “이자”란”을 “이자”란 퇴직일시금의 반납금에 대해서는”으로, “현재”를 “현재 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말하고, 퇴직연금일시금의 반납금에 대해서는 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월 1일 현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되”를 “제2항에 따라 적용하는 금리를 각각 적용하되”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있다.”를 “있으며, 별표 6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이용하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의 본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7에 따른 자료 제출로 재외공관의 장의 확인에 따른 신분 변동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제41조제2항 중 “재직기간이 짧거나 금액이 적은 경우로서 공단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청구서 제출을 하지 아니하고 전화로 퇴직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퇴직급여청구서 제출을 하지 아니하고 전화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직기간이 짧거나 금액이 적은 경우로서 공단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공단이 정하는 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이 제1항의 퇴직급여를 청구하려는 경우

제52조제3호나목2) 중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 정도를 증명하는 서류나 같은법 제32조의3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

제57조제2항 중 “재직기간이 짧거나 금액이 적은 경우로서 공단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수당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퇴직수당청구서 제출을 하지 아니하고 전화로 퇴직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퇴직수당청구서 제출을 하지 아니하고 전화로 퇴직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직기간이 짧거나 금액이 적은 경우로서 공단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수당을 청구하려는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공단이 정하는 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이 퇴직수당을 청구하려는 경우

제72조제6항제4호 중 “세 자녀 이상”을 “두 자녀 이상”으로 한다.

제96조 중 “여권번호”를 “여권번호·면허번호”로 한다.

별표 3에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공직선거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별표 4에 제26호를 제29호로 하고,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 자료

27.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

28. 「공직선거법」에 따른 당선인에 관한 자료(성명, 주민등록번호, 선거구)

별표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수급자 등의 본인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제33조제3항 관련)

1.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는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5호에

다른 지문·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의 개인정보

2.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른 본인에 관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등의 행정정보(법원의 재판사무·조정사무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무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수급자 등의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공단이 정한 자료

별표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7] 외국에 거주하는 수급자에 대한 재외공관의 장의 확인을 대체·보완할 수 있는 자료(제33조제4항 관련)

1. 출입국사실증명서, 세금신고증명서, 전기·수도고지서, 병원진료 및 예방접종 확인서 등 거주국의 국가 또는 공공기관(병원 포함)에서 발급한 자료로서 수급자의 현재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그 밖에 재외공관의 장의 확인을 대체·보완할 수 있다고 공단이 정한 자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 제9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하고, 제22조 제2항·제3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8일 이후 사망하거나 전사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반납금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받으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분할납부 중의 반납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법인·단체(제94조제1항 관련)

1.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4.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5. 「평생교육법」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사시설을 설치·조성·운영 또는 관리하는 자
7.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보험업법」,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한국해운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원양산업발전법」, 「민법」 및 「선원법 시행령」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
9. 「공직선거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10. 그 밖에 공무원연금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자료를 보유한 기관·법인·단체

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제94조제2항 관련)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득·과세·환급자료, 직장 및 사업장의 종류 관련 자료
4. 「국민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및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및 별정우체국 직원에 관한 자료와 각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자료, 장기요양급여자료, 건강검진 결과자료, 의료급여 관련 자료,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에 관한 자료
6.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사업장 성립·적용·탈퇴·해지 및 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 등 부과·징수에 관한 자료와 급여에 관한 자료, 가입자 종류별 대상기관과 보수월액에 관한 자료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절차 관련 사건번호, 개시결정일, 면책결정일, 당사자 등에 관한 자료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말소 결정에 관한 자료
8. 「가사소송법」에 따른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에 관한 자료
9.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 및 재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 형사재판 판결문, 형사재판 확정증명서, 경찰서에 접수된 가출 또는 실종신고에 관한 자료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부동산등기법」 및 「건축법」 등에 따른 건물, 「선박법」 및 「어선법」에 따른 선박 및 어선,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등의 등기·등록 및 공시가격에 관한 자료
11. 「선원법」에 따른 선박 승선자에 관한 자료
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

- 를」에 따른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에 관한 자료
1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자료 및 출입국에 관한 자료
 14. 「국적법」에 따른 국적상실·국적취득 등에 관한 자료
 15. 「여권법」에 따른 여권의 발급에 관한 자료
 16.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관한 자료
 17.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에 관한 자료
 1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관한 자료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화장 등 장사에 관한 자료
 2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 장애인복지시설 입소 등에 관한 자료
 21.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 등에 관한 자료
 2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장학금 및 그 외의 장학금 지급내역 및 학사정보에 대한 전산정보자료
 23.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지급하는 교내장학금 및 그 외의 장학금 및 학사정보에 대한 전산정보자료
 2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과 「보험업법」, 「선주 상호보험조합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보험금 산출 및 지급에 관한 자료
 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한국해운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원양산업발전법」, 「민법」 및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보험금 및 공제금의 산출 및 지급에 관한 자료
 2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 자료
 27.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
 28. 「공직선거법」에 따른 당선인에 관한 자료(성명, 주민등록번호, 선거구)
 29. 그 밖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별표 3에 따른 기관·법인·단체가 보유한 자료로서 공무원연금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자료

수급자 등의 본인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제33조제3항 관련)

1.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는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지문·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의 개인정보
2.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른 본인에 관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등의 행정정보(법원의 재판사무·조정사무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무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수급자 등의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공단이 정한 자료

외국에 거주하는 수급자에 대한 재외공관의 장의 확인을 대체·보완할 수 있는
자료(제33조제4항 관련)

1. 출입국사실증명서, 세금신고증명서, 전기·수도고지서, 병원진료 및 예방접종 확인서 등 거주국의 국가 또는 공공기관(병원 포함)에서 발급한 자료로서 수급자의 현재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그 밖에 재외공관의 장의 확인을 대체·보완할 수 있다고 공단이 정한 자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5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급여(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퇴직유족연금은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급여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다만, 연봉제의 적용대상(새로이 연봉제의 적용대상으로 특별승진된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u> 1. <u>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u> 2. 「공무원보수규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특별승진으로 인한 봉급월액 증가분(새로이 연봉제의 적용

대상으로 특별승진 된 경우에는 호봉제적용대상 공무원에 준하여 종전의 직급·호봉체계에 따라 승진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봉급월액 증가분을 말한다)

3. 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제2항 각 호의 금액(직무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대상으로 특별승진 된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68조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나등급에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받는 직무급 금액을 말한다)에 대통령령 제2053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연봉월액 중 봉급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

④ (생략)

제9조(소득자료의 제출 및 기준소득월액의 통보)

① 제11조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각 호에 따른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9조(소득자료 등의 제출 및 기준소득월액의 통보)

① (현행과 같음)

기간까지 각각 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신설)

제22조(반납금의 산정) ① (생략)

② 법 제2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
도마다 「은행법」에 따라 설립
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
로 하는 은행(이하 “전국은행”
이라 한다)이 적용하는 1월 1일
현재 정기에금금리 중 가장 높
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
자를 말한다.

③ 법 제2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1. ~ 3. (현행과 같음)

4. 제5조제4항에 따른 봉급월액
증가분의 산정 및 급여 지급에
필요하다고 공단이 정한 자료:
법 제30조제1항 단서의 급여 사
유가 발생한 즉시

제22조(반납금의 산정) ① (현행
과 같음)

② -----
----- 이자”란
퇴직일시금의 반납금에 대해서
는 -----

----- 현재 정기
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를 적용
하여 산정한 이자를 말하고, 퇴
직연금일시금의 반납금에 대해
서는 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
당 연도마다 전국은행이 적용하
는 1월 1일 현재 ---.

③ -----

재직기간 합산을 승인한 연도의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
하는 정기에금금리 중 가장 높
은 금리를 적용하되, 분할납부
중의 이자율과 재직기간 합산을
승인한 때의 이자율 차이가 2퍼
센트포인트 이상이 되는 경우에
는 그 증가하거나 감소한 이자
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말한다. 분할납부 중 그 변동된
이자율과 비교하여 다시 2퍼센
트포인트 이상 증감이 있는 경
우에도 또한 같다.

제33조(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③ 공단은 법 제93조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수급권의 변경 또
는 소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을 대상
으로 수급자의 사망·이혼·생
계유지 또는 양육책임 이행 여
부 등에 관한 조사를 하거나 이
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라 적
용하는 금리를 각각 적용하되-

-----.

-----.

제33조(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③ 공단은 법 제93조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수급권의 변경 또
는 소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을 대상
으로 수급자의 사망·이혼·생
계유지 또는 양육책임 이행 여
부 등에 관한 조사를 하거나 이
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별표 6에 해당하
는 자료를 수집·이용하여 수급
자 또는 그 가족 등의 본인 신

④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는 매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신분변동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재외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국가의 경우에는 그 인접국에 있는 재외공관의 장을 말한다)의 확인을 받아 매년 6월30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⑤ ~ ⑥ (생략)

제41조(퇴직급여청구) ① 법 제43조 또는 제51조에 따라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직급여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이 짧거나 금액이 적은 경우로서 공단이 정한 기준에 해당

원을 확인할 수 있다.

④ -----

----- . 다만, 별표 7에 따
른 자료 제출로 재외공관의 장
의 확인에 따른 신분변동 사항
을 기재한 서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41조(퇴직급여청구) ① -----

-----.

②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퇴직급여
청구서 제출을 하지 아니하고

하는 사람이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청구서 제출을 하지 아니하고 전화로 퇴직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본인 확인과 청구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녹취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생략)

제52조(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신청)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가. (생략)

나. 수급권이 상실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생략)

전화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1. 재직기간이 짧거나 금액이 적은 경우로서 공단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공단이 정하는 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이 제1항의 퇴직급여를 청구하려는 경우

③ (현행과 같음)

제52조(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신청)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가. (현행과 같음)

나. -----
-----: -----

1) (현행과 같음)

2) 장애 상태에 있던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제57조(퇴직수당의 청구)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퇴직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직수당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이 짧거나 금액이 적은 경우로서 공단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수당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퇴직수당청구서 제출을 하지 아니하고 전화로 퇴직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본인 확인과 청구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녹취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2)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 정도를 증명하는 서류나 같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57조(퇴직수당의 청구) ①

②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퇴직수당청구서 제출을 하지 아니하고 전화로 퇴직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제72조(대여학자금부담금) ① ~ ⑤ (생 략) ⑥ 대여학자금의 상환은 대여를 받은 공무원 본인 또는 그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후(자녀가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대학에 편입학한 경우에는 4년제 대학 졸업 후를 말한다)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하되, 기여금징수의무자가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공단에 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3. (생 략) 4. <u>세 자녀 이상</u>의 대여학자금 상	1. <u>재직기간이 짧거나 금액이 적은 경우로서 공단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수당을 청구하려는 경우</u> 2.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공단이 정하는 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이 퇴직수당을 청구하려는 경우 제72조(대여학자금부담금)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u>두 자녀 이상</u>-----
--	--

환기간이 겹치는 경우

⑦ (생 략)

제9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연금취급기관장, 공단(법 제23조 및 이 영 제16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및 인사혁신처장은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및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⑦ (현행과 같음)

제9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연금취급기관장, 공단(법 제23조 및 이 영 제16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및 인사혁신처장은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및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	
연 락 처	(044) 201 - 8417